제27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 2 호

운영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신원철 의원 대표발의)(신원철 · 강감창 · 강구덕 · 강성언 · 권미경 · 김경자(양천) · 김경자(강서) · 김광수(노원) · 김광수(도봉) · 김구현 · 김기대 · 김기만 · 김동승 · 김동욱 · 김동율 · 김문수 · 김미경 · 김상훈 · 김생환 · 김선갑 · 김영한 · 김용석(도봉) · 김용석(서초) · 김인제 · 김인호 · 김정태 · 김제리 · 김진수 · 김진영 · 김진철 · 김창수 · 김창원 · 김춘수 · 김태수 · 김현기 · 김혜련 · 김희걸 · 남재경 · 남창진 · 맹진영 · 문상모 · 문영민 · 문종철 · 문형주 · 박기열 · 박래학 · 박마루 · 박성숙 · 박양숙 · 박운기 · 박준희 · 박중화 · 박진형 · 박호근 · 서영진 · 서윤기 · 성백진 · 성중기 · 송재형 · 신건택 · 신언근 · 양준욱 · 오경환 · 오봉수 · 오승록 · 우미경 · 우창윤 · 우형찬 · 유광상 · 유동균 · 유용 · 유찬종 · 유청 · 이명희 · 이병해 · 이복근 · 이상묵 · 이석주 · 이성희 · 이숙자 · 이순자 · 이승로 · 이신혜 · 이윤희 · 이정훈 · 이종필 · 이창섭 · 이현찬 · 이혜경 · 장우윤 · 장인홍 · 장흥순 · 전철수 · 조규영 · 조상호 · 주찬식 · 진두생 · 최영수 · 최웅식 · 최조웅 · 최판술 · 최호정 · 한명희 · 허기회 · 황규복 · 황준환 의원 발의) 1면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선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결의안 1건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신원철 의원 대표발의)(신원철 · 강감창 · 강구덕 · 강성언 · 권미경 · 김경자(양천) · 김경자(강서) · 김광수(노원) · 김광수(도봉) · 김구현 · 김기대 · 김기만 · 김동승 · 김동욱 · 김동율 · 김문수 · 김미경 · 김상훈 · 김생환 · 김선갑 · 김영한 · 김용석(도봉) · 김용석(서초) · 김인제 · 김인호 · 김정태 · 김제리 · 김진수 · 김진영 · 김진철 · 김창수 · 김창원 · 김춘수 · 김태수 · 김현기 · 김혜련 · 김희걸 · 남재경 · 남창진 · 맹진영 · 문상모 · 문영민 · 문종철 · 문형주 · 박기열 · 박래학 · 박마루 · 박성숙 · 박양숙 · 박운기 · 박준희 · 박중화 · 박진형 · 박호근 · 서영진 · 서윤기 · 성백진 · 성중기 · 송재형 · 신건택 · 신언근 · 양준욱 · 오경환 · 오봉수 · 오승록 · 우미경 · 우창윤 · 우형찬 · 유광상 · 유동균 · 유용 · 유찬종 · 유청 · 이명희 · 이병해 · 이복근 · 이상묵 · 이석주 · 이성희 · 이숙자 · 이순자 · 이승로 · 이신혜 · 이윤희 · 이정훈 · 이종필 · 이창섭 · 이현찬 · 이혜경 · 장우윤 · 장인홍 · 장흥순 · 전철수 · 조규영 · 조상호 · 주찬식 · 진두생 · 최영수 · 최웅식 · 최조웅 · 최판술 · 최호정 · 한명희 · 허기회 · 황규복 · 황준환 의원 발의)

○**위원장 김선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달 지방자치 기념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벌써 한 27년 됐지요. 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문재인 정부에 많은 지방의회 지방의원님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집행부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정책전문인력 확충, 그다음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아니라 거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방분권 TF가 가동되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복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치입법, 조직, 재정, 자치복지 그리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인력 보좌관, 인사청문회 등등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 위원으로 활동하신 우리 운영위원회 송재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송재형 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난 26년간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6일 전남 여수에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고 하였고,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제헌 이후 지금까지 헌법,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치우친 반쪽짜리 규정이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규정하고 온전한 지방분권을 확립할 절대절명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과 11월 9일 법제처에서 발표한 지방분권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령안에는 지방의회에 관한 추진과제가 극히 미미하였습니다. 이에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을 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여기 계신 위원님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전체 106분의 의원님들이 모두 동의해 주신 안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갑**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수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신원철 의원 외 105분의 의원님이 제안하여 2017년 11월 10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면서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이래 기관대립형 구조 속에서 强시장, 弱의회형의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은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정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새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으나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이 매우 미미하게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전국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근간으로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2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새 정부는 분권형 헌법개헌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6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전국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행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지방분권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총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의 30대 과제 중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위한 과제는 지방의회 역할 확대라는 한 가지 분류 안에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확대, 입법정책 전문인력 지원,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 단 세 가지만이 세부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통한 단체장의 권한 확대와 재정분권, 조직과 인사상의 자율권 확대 등 대부분이 단체장의 자치역량 강화에 중심을 두고 있어 强시장, 弱의회형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와 분권,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된 가운데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첫째,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며, 지방의회를 도외시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전면 수정,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금년 내 본회의 가결 촉구,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년간 지방분권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온 서울특별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은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금년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본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로드맵의 전면 수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매우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선갑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절차를 밟기 전에 한 가지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회의장에는 외부참관인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 뒤쪽에 세 분이 웬 분인가 했더니 아, 다섯 사람, 다섯 사람이 우리 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미리 회의 서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들어와 계시네요, 누구신가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와 같이 한국청년유권자연맹 2017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바지 모니터단입니다. 함께 자리하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들으셨듯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선갑 이상으로 제27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갑 김기대 송재형 김동율
김미경 박기열 박호근 이신혜
장우윤 한명희 박마루 우미경
최판술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출석공무원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경호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의사담당관	송인상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속기사

김남형 장재희